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27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김재원·서영석·황운하

이해민 · 신장식 · 이용선

박은정 • 김준형 • 전용기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비어업인의 자격과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유해해양생물의 종류·개 체수 및 포획·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생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비
	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
	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
	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
	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
	이라 한다)로 하여금 유해해양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u>할</u>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유해해양생물
	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비어
	업인의 자격과 비어업인이 포
	획ㆍ채취할 수 있는 유해해양
	생물의 종류·개체수 및 포획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